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장

제124호

2015. 12. 16(수)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 2015 -1521 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입법예고.....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2015 -1521호

『남원시 자체감사 규칙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1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(안 제3조)
- 나.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감사대상기관 감사 생략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다.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근거 마련(안 제11조의2)
- 라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(안 제22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6일
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감사실장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90-701 /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감사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81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(☎063-620-60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: 붙임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2. .
 제출자 : 남원시장
 제안설명자 : 감사실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(안 제3조)
- 나.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감사대상기관 감사 생략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다.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근거 마련(안 제11조의2)
- 라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나. 그 밖의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간: 2015. 12. . ~ 2015. 12. (20일간)
 - 결과:
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의뢰 중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 이내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사담당자 등이”를 “감사담당자, 외부 전문가(이하 “감사담당자 등”이라 한다) 가”로, “해당 감사담당자 등을”을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감사대상이 되는 기관”을 “감사대상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감사대상이 되는 기관·부서”를 “감사대상기관, 부서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경우 감사담당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3항 중 “등에 대해서는”을 “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감사”를 “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”로, “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”을 “감사대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감사 성과”를 “감사의 성과”로 한다.

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중복감사 지양) 감사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 제2항 본문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응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문성을 요하는”을 “전문성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감사대상기관의 주”를 “감사대상기관의 주요”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기재한”을 “적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 제3항 본문 중 “신빙성”을 “신뢰성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3항 단서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발부”를 “발급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
6. 건의·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

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병과”를 “병과(併科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등으로 하여금”을 “등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적용한다.”를 “적용”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받는”을 “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“이상이 소요되는”을 “이상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그 감사결과”를 “감사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발견된 때”를 “발견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발견된 때”를 “발견된 경우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때와”를 “경우와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본문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불복에 관하여는”을 “불복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”을 각각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그 이행결과”를 “이행결과”로 한다.

제28조제4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3호 중 “그 밖에 감사실이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등을 할 때 우대”를 “등에 우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“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문 답 서 (제31조 관련)

주 소: _____
 소 속: _____
 직위와 직명: _____
 성 명: (생년월일) _____
 (전 소속, 직위와 직명)

위의 사람은 _____ 사건에 관하여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에서
 (직) (성명)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.

문: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 한 기간은?

답: _____

문: 귀하의 담당직무는?

답: _____

(후면)

문: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?

답: _____

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(낭독)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(날인, 무인)하게 하다.

	20	년	월	일	
진술자		직	성명		(인)
감사자		직	성명		(인)
입회자		직	성명		(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감사의 종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의 주기로 실시한다. 다만, 시장은 감사 인력,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감사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3년 이내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감사담당자 등의 제척·회피 등) 시장은 <u>감사담당자</u>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해당 감사담당자</u>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감사대상이 되는 기관</u>,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2. <u>감사대상이 되는 기관·부서</u>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</p>	<p>제5조(감사담당자 등의 제척·회피 등) ----- <u>감사담당자</u>, 외부 전문가(이하 "<u>감사담당자 등</u>"이라 한다) 가 ----- <u>해당</u> -----.</p> <p>1. <u>감사대상기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<u>감사대상기관</u>, 부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

3. (생략)

제6조(청렴의무 등) ① (생략)

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전문성의 확보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,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10조(감사의 생략)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

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청렴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전문성의 확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등은 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제10조(감사의 생략) -----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-----

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(공개감사의 운영) 시장은 감사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(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)
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시의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 다만,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

-- 감사대상기관은 -----

-----.

제11조(공개감사의 운영) 시장은 감사의 -----

-----.

제11조의2(중복감사 지양) 감사 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)
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, 감사반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.

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
- 3. ~ 6. (생략)

제14조(자료제출 요청) ① (생

----- 따라야
-----.

③ ----- 전문성이 필요한 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.

----- 경우에는 -----
-----.

⑤ 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-----

- 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자료제출 요청) ① (현행

략)

②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·장소·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. 다만,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⑤ (생략)

제15조(증거서류의 확보 등) ①·

② (생략)

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과 같음)

② -----
없으면 -----
-----.

③ -----

경우에는 -----
적은 -----.
-----.

④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증거서류의 확보 등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신뢰성-----

-----.

시 보

④ (생 략)

제16조(확인서의 요구 등) ①·②
(생 략)

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
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
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
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
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
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
를 요구한다. 다만, 실시감사
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
를 발부할 수 있다.

제18조(감사결과에의 보고) 감사담
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
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
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5.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
6. 건의·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
- 7.·8. (생 략)

제19조(감사결과 처분) ① (생 략)

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확인서의 요구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제18조(감사결과에의 보고)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
6. 건의·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
- 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감사결과 처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호와 같으며, 2개 이상의 처분
등을 병과 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 략)
- 6. 권고: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7.·8. (생 략)
- ③ (생 략)
-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- 1. (생 략)
- 2. 경고·기관경고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,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.

- 3. (생 략)
- ⑤ (생 략)

제21조(감사결과와 통보 등)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

--- 병과(併科) 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-----

- 등에게 -----

- 7.·8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----- 적용 -----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감사결과와 통보 등) -----

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그 결과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상명령: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

2.·3. (생략)

4. 개선요구, 권고, 통보: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. 다만,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

제22조(감사결과 공개)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, 고충·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범죄 및 분실·훼손 등의 보고)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받은 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.
----- 이상 필
요한 -----

제22조(감사결과 공개) -----
----- 감사결과-----
----- 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범죄 및 분실·훼손 등의 보고) -----

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

2. 현금, 물품, 유가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

제25조(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)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6조(재심의 신청 등)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1. ----- 발견된 경우

2. ----- 발견된 경우

제25조(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) ① -----
----- 경우와 -----
----- 경우에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재심의 신청 등) ①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 불복은 -----
-----.

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,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행결과의 제출)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이행결과의 확인) ① ~ ③ (생략)
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대상기관의 장,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

제29조(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)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

②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 경우에는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없으면 -----
-----.

제27조(이행결과의 제출) -----

이행결과-----
-----.

제28조(이행결과의 확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제29조(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) ① -----

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그 밖에 감사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, 자질,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(생략)

제30조(감사공무원의 우대)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.

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2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에 따른다.
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그 밖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감사공무원의 우대) ① -----

--- 등에 우대-----.

② -----

----- 없으면 -----
-----.

제32조(준용) -----

----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-----

-----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안 의견제출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15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